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병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3. 6. 2.

발의의원 : 하병문 · 김대현
김원규 · 김정옥
김재용 · 류종우
박우근 · 윤영애
이동욱 · 이영애
전태선 · 하중환
(12명)

1. 제안이유

건축물 미술작품 다양성 확대를 위한 공모방식 제도 도입 및 작가들의 작품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나.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제21조)
- 다.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2)
- 라. 미술작품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3, 제21조의4)
- 마.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붙임 참조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의 설치

제17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시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건축물이 복합된 경우 해당용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하고,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3. 판매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7. 위탁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제19조(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 2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 제1호: 1천분의 1
2. 영 별표 2 제2호가목: 1천분의 5

제20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건축·공간디자인·조경·안전·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2. 그 밖에 미술작품 심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미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 기간 중 대구광역시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미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을 회의 시 마다 선정하여 소집하며, 선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시설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미술위원회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위원장 등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⑦ 그 밖에 미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① 시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규칙이 정하는 기한까지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를 규칙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건축주 및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시장에게 그 결과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심의신청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확인으로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

제21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절차 및 심사

방법 등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을 통해 공고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시장에게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경우에는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의3(미술작품 설치확인) ①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미술작품의 이전·변경 건에 대하여 건축주는 설치완료 즉시 시장에게 설치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의4(미술작품 사후관리) ① 미술작품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 미술작품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시장에게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6장 지역문화예술인물 현창(顯彰)

제22조(지역문화예술인물 현창) 시장은 문화예술분야에서 대구를 빛낸 인물(이하 “지역문화예술인물”이라 한다)의 숭고한 업적과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인물 현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인물 선정, 연구조사, 교육 홍보
2. 지역문화예술인물 생가 등 인물과 밀접히 관련된 장소와 건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또는 기금 출연에 관한 의무 통지
2. 제21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접수 관련 업무
3.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공모·선정 대행 접수 관련 업무
4. 미술작품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5. 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및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6. 미술작품 철거·훼손·분실 시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조치 등 사후관리

(붙임)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 7. 업무시설 / 8. 숙박시설 /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③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비용(이하 “건축비용”이라 한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2]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7. 19.>

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붙임)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 2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동주택(군 지역 포함): 1,000분의 1</p> <p>2.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중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000분의 5</p>	<p>제19조(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 2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영 별표 2 제1호: 1천분의 1</p> <p>2. 영 별표 2 제2호가목: 1천분의 5</p>
<p>제20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략)</p> <p>② (생략)</p> <p>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p> <p>2. (생략)</p> <p>③ 미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제20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미술·건축·공간디자인·조경·안전·유지관리 분야 -----</p> <p>2. (현행과 같음)</p> <p>③ -----</p> <p>----. 또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 기간 중 대구광역시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p>

④ · ⑤ (생략)

⑥ 미술위원회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위원장 등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⑦ (생략)

제21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①

시장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규칙이 정하는 기한까지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제20조의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11조-----.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①

---- 영 제12조제2항-----
----- 건축하려는 -----

-----.

② 건축주는 건축허-----

-----.

③ ---- 미술작품-----

---- 미술위원회의 -----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의 미술작품에 대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이전 및 변경 심의 신청을 해야 하고, 시장은 제3항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⑥ 제2항의 심의신청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확인으로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 변경

제21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절차 및 심사방법 등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을 통해 공고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시장에게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경우에는 미술위원회의

<신 설>

심의를 거쳐 공모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의3(미술작품 설치확인) ①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미술작품의 이전·변경 건에 대하여 건축주는 설치완료 즉시 시장에게 설치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의4(미술작품 사후관리)

① 미술작품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 미술작품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 또는 관리

<신 설>

책임자는 시장에게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또는 기금 출연에 관한 의무 통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이전·변경 심의 신청 접수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같은 영 제15조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영 제15조의2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제24조(권한의 위임) -----

-----.

1. -----

----- 통지

2. 제21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접수 관련 업무

<p><u><신 설></u></p>	<p>3.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공모·선정 대행 접수 관련 업무</p>
<p><u><신 설></u></p>	<p>4. 미술작품 설치확인 및 사후 관리</p>
<p><u><신 설></u></p>	<p>5. 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및 관리대장의 작성·관리</p>
<p><u><신 설></u></p>	<p>6. 미술작품 철거·훼손·분실 시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조치 등 사후관리</p>